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14.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2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4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45. 군급식기본법안(대안)
4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4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5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5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5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5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5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5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5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5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5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5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5
14.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5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5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5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5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5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5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5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5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5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5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5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5
2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5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5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5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5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5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5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6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6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6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6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6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6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6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6
4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6
45. 군급식기본법안(대안)	6
4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6
4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0
가. 국방부 소관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청원 심사 기간 연장 및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께서 저희 국방위원회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안녕하세요?**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위원회에 보임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승찬 간사님 그리고 강대식, 두 분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이 왜 국방위에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기재위에 있다가요, 논산·계룡이 국방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이 돼서 국방과 안보만큼은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국방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역할을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 위원님 오신 것 축하하고, 국방위원회가 군기가 세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웃음소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방위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의 오래된 격언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5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황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14.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2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4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45. 군급식기본법안(대안)
4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15시06분)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6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4월 23일 법안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 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7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군급식기본법안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급식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제대별 군급식위원회를 두며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군급식은 각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방산물자의 무단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 승인의 요건 척차, 관리 및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황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군급식기본법안 관련해 가지고 직무대행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체계는 이제 좀 잡혔지요. 학교급식하고 달리 군급식도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군인들의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관리하려면 영양사, 조리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군 내에서 기존에 해 오던 내부 인력들이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국방부에서 답변한 내용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그때는 4000명에 2000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이것 만약에 메뉴 설계하는 것을 영양사, 조리사 업무라고 보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명도 필요없어요. 그런데 학교급식도 보면 1만 명 넘게, 이건 결국은 그대로 잘 관리가 되는지 관리 운영의 기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 급식은 영양사 한 명이 딱 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다 보내면 그 렇게 다 요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법률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체계를 잘 관리감독하고 추진하고 이럴 인력이 당연히 배치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견 동의하고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군급식위원회가 과거에 없었느냐? 사실은 급양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메뉴를 선정해서 현재 각 부대에 똑같은 품목으로 동일하게 지역별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가 영양사가 없다고 그래서 조리가 각 부대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오히려 문제는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전방의 격오지라든지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영양사, 조리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대 규모가 독립부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런 취업을 할 만한 자격증을 가진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든 분들은 잘 없어서 오히려 저는 전방 격오지나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영양사 자격증이나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휘관이 판단해서 충분히 조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저희 어머니들 다 조리사 자격증 있고 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급양대에서 부식을 사서 표준 조리방법을 내려 주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도 조리할 수 있게끔 오히려 지휘관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주신다면 오히려 군인 가족이라든지 그 근처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좀 고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법안에 보면 군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법안 관련해서 혹시 지금 학교급식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학부모와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사람이나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도 그렇고 군급식도 그렇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두는데 오히려 지휘관들이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표준적으로 각 급양대에서 책임지고 내려 주는 부식이나 이런……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특정한 부식이나 특정한 어떤 조달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군급식이 원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차단되도록 충분히 국방부에서 지휘관들에게도 권한을 주시고 학교급식처럼 이렇게 도시나 이런 테서 운영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고현석 장군 나오셨고, 또 최성혁 장군님인가요?

○**해군참모차장 최성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공군의 박 장군님.

지금 황희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있잖아요. 법률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법률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각 부대에 갔을 때 급식에 대한 이런 여러 것들을 세세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차관님께서 챙기시겠어요? 어디서 챙기시겠어요?

지금 육해공의 군을 지휘하고 계신 부대에서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짜 주세요. 아셨지요?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예.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냥 조리 방법만 내려가 가지고 법에 의해서 그냥 내려진다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 조리사를 특히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의 문제를 법률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답변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그 부분을 우리 병사들이 급식을 잘하고 남김없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시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이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를 현장에서 답안을 찾아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 3항과 제79조2의 2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1항까지 37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계엄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2항 계엄법 일부개별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군급식 기본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동 법안은 제정법으로서 먼저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6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5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조부터 11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조부터 18조까지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 및 제44항 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급식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5항 군급식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15시21분)

○위원장 성일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7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방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805억 원을 감액하고 군사시설비를 포함한 222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23억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연내 집행 가능한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설치 등 총 222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통해서 적시에 집행해서 추경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7억 원이 감액된 3조 6295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입대 인원 축소를 고려할 때 감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예년의 병역 운영률과 인건비 전용의 유연성을 감안할 때 추가 감액 편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6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신축을 위한 선행연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선행연구는 본격적인 건설 사업이 아닌 사전검토 단계로서 건설경기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고 공군이 본 사업을 203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3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해군사관학교 내의 종교시설 진입로 보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추경 세부 편성내역을 볼 때 구조적 결함에 대한 근본적 보수라기보다는 임시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종 오 수석님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 오명호 수석이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면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여야를 넘어서 아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국방위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국방위원님들 현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해 주셔서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수 한번 쳐 드리시지요.

(박수)

오명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 박선원 위원님은 저기도 가셔야 되니까 다음에 하시지요.

○박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요. 또 혀영 위원님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추경예산이나 법안하고 관계없는 건데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북한의 핵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평산 공장은 수도권과 불과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장관대행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기호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언론에 나온 것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속조치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단 사실 관계 여부부터가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기호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위임한 대통령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이거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하실 때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동일한 잣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입니다. 과거에 23년도에는 9회, 24년도에 14회, 금년도에는 4회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 말씀드렸지만 특식이 제공되는 것에 대한 장병들의 봉급 인상분 또 다른 영역에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 특식 제공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것을 대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인 게 아니고.

○한기호 위원 그래서 봉급을 더 줬기 때문에 특식을 주는 것을 이제는 덜 주겠다 이게 맞나요? 아니, 대행께서는 특식을 봉급하고 연관해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러니까 장병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역이 과거에는 특식을 사서 주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그것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거나 다른 방법에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른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23년도에는 9회를 주고 그때는 165억을 편성했어요. 24년도에는 14회를 주고 410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25년도에는 4회로 줄이고 11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봉급을 더 준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인다는 것은 이게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지역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줄여 놓고서…… 그러면 장병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간부들의 훈련급식비, 소대지휘활동비, 단기복무장려금, 수당 이것도 2024년 보다 예산안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올리는 데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추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5년도 국방예산 편

성할 때 그 당시에 증액하려고 편성했던 것들이 그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사안들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증액했던 내용들은 지금 현재 1·2차 추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도 포함 안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해서 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추경의 편성 개념이, 지금 정부가 한 것이 일단은 민생과 즉시 집행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민생에는 국생도 같이 들어가고 군생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군인들은 민생에 포함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들이 최대한 연내에 집행하고 이것들이 또 선순환이 돼서 저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약 2000억 정도의 증액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 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추경 개념이라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더 넣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핵폐수와 관련된 것은 직접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의 평산 광산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이미 다 했고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임진강 쪽으로 들어오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까지도 다 요청을 했으니까 한기호 위원님 방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할 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중요한 것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늘은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차관님,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역상생 장병 특식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전문위원회께서 지금 여러 가지 감액요소 지적한 것, 그것 감액하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추경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상생 장병 특식은 부대 인근 지역 업체로 가서 장병들이 외식하거나 또 푸드트럭이나 케이터링, 배달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역도 살고 또 장병들도 부대 급식 외에 다양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니까 적극적으로 추경 과정 속에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가서 살피고 관련된 내용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외에 일반공무원들이나 경찰, 소방관들 당직근무비에 비해서 우리 군인들의 당직근무비가 많이 낮습니다. 평일에는 2만 원, 휴일에는 4만 원. 다른 공무원들 보니까 5만 원, 1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처우개선비도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차기 예산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저희들이 그때 못 반영됐던 내용들 의견을 다시 드릴 것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 자동진급제 폐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병 자동진급제는 자연진급 기간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이 지나면 별도 심사 없이 진급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국방부 계획인데요. 지금 이 병 자동진급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만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징집병 월급 줄여 세수 바꾸나’ 또 ‘일병만 15개월’ ‘하루짜리 병장 체험’ ‘계급 역전, 사기 저하’ 등 관련된 제목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진급 기간 제한을 삭제하게 되면서 15개월 동안 일병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아마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 진급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받고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허영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이 민원사항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병으로 15개월을 지나고 또 전역일 전일 하루만 병장이 되는 일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까 같은 맥락에서……

○**허영 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불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실적으로는……

○**허영 위원**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허영 위원** 차관님,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진급 대상 약 14만 7000명 중에서 약 3만 명, 20% 정도가 자연진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상등병에서 병장까지는 조기진급이 한 20%, 적기진급이 한 60%, 지연진급이 한 20%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제가 전투력 강화나 성실복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병제 제도하에서 진급 심사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요소들도 많고 불공정한 평가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의 내용들입니다. 또 계급 역전이 가져올 군 기강과 사기 저하 문제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폐지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도 진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까지는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국민청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게 전 장병에 다 해당되는 제도의 전환인데 이런 것들이 섣부르게 발표되거나 아주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게, 이게 군장병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신 예산 내용 중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 사업 등등에 대해서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비롯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 인건비 관련입니다. 지금 597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의 사유는 분명하기는 합니다. 병역자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출이 덜 들어가서 그러기는 한데요. 이거를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역자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병역자원 절벽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구조 개편을 위한 병역 구조 전환이라든지 부대 구조 개편 또 군 간부 확대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간부 확대도 필요합니마는 제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군 내 간부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또 물어보면 처우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2025년 올해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초급간부 초봉 월급을 300만 원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 인건비가 597억 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을 그냥 감액하시지 마시고 초

급간부 더 나아가 중견간부들의 사기를 조금 회복하고 그리고 이 처우 개선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으로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비도 사실은 유사한 경찰· 소방과도 큰 차이가 있고 일반공무원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간부훈련급식비에서 자 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사화물비 실비 반영이 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주 거환경개선비 실비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5 년 예산으로 반영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추경 검토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력 획득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ROTC 후보생들의 생활지원금 이 부분도 한 달에 18만 원이기 때문에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 한 36만 원 정도로 단가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병 인건비, 사람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감액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요청하셨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지난해 비화폰 구입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때……

○추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집행 중이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114억 아닙니까, 지난해? 제가 알기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예산 부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추미애 위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을 다 사면 9816대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추미애 위원 내란 실행을 위해서, 군부를 이용한 계속적인 집권 영구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이것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란 관련 예산은 즉시 집행 중단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을 새 내각이나 새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국방부 내에서 쓰는 군 보안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란의 과정에서 썼던 그런 것은 군에서 쓰는 보안폰이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 AI 뭐 이런 쪽으로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갑자기 지난해에 비화폰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해 가지고 무려 1만 대 가량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저희가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평가 때문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새 정부에 보고를 하시고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회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고 갑자기 24년에 무슨 비화폰 군 내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시키고 이것을 막 지급하고 했다는 것 상당히 의혹적인 거지요.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김동혁 단장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혁 단장은 대통령의 800-7070,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요? 수사 외압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찍이 내부 항명 사건, 군 내 항명 사건으로 돌려서 부당한 기소를 한 사람이 바로 이 김동혁 검찰단장입니다.

그런데 김동혁 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가지고 이미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김동혁 단장이 셀프 불기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 이것을 미리 고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지금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특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김동혁 단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제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중인데 이것은 빨리 항소 제기한 자체도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리한 공소장 변경, 공소 유지—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이게 다 김동혁 단장의 지휘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직 해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김동혁 단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 직책에 대한 직무를 배제하고 보직을 해임시킬 만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제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조차도 되돌아와서 다시 검찰단장 김동혁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현실을 잘 살피셔야지요. 수사 방해지요, 사법 방해 행위이고. 빨리 보직 해임 바라고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방첩사 블랙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패널 보여 드리면, 약간 머신가요? 전현직 장성 블랙리스트도 있고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입니다. 또 여인형 육군참모총장, 나승민 육군감찰실장 블랙리스트 있고요. 군의관 블랙리스트, 제가 최근에 밝혔습니다. 방첩사 조직 내부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또 민간인 사찰 문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미리 공개하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특검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미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요.

내란 종식에 대해서 국방부는, 불행하게도 우리 군 전체가 이 내란 세력의 하수가 되어 벼렸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블랙리스트를 선제 공개 게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이 수사기관이 수사하려 오면 어디어디 압수수색하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리하시지요.

○추미애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쓰십시오.

○추미애 위원 외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려 오면 나승민 대령이 ‘서버는 여기 있습니다’ ‘지휘체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데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저게 사실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의심스럽다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직 해임 조치 바랍니다. 나승민 실장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밑의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진 모 대령, 이 모 중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직 해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기재부 기본 방침이 소비 여력 보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8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번에 보니까 육군 연병장 현대화 작업이 있습니다, 인사선발센터 연병장 신축 등 18개 부대인데. 육군 연병장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인사선발센터는 육군본부에서 평상시에 사용을 많이 하는 시설도 아닌데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것이 국방·군사시설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제정돼 있어서 지금 25년 7월까지 되고 있다는데 왜 이것이, 만약에 육군 연병장 현대화가 필요하다면 전방부터 아니면 소부대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육군 인사선발센터부터 진행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우선순위가 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간부들은 초급간부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 외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번에 병사들 월급이 597억 원이 절약됐다면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간부들 초과근무하는 것 현실화시키셔 가지고, 현재 지역마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병 인건비 줄여 가지고 인사선발센터 연병장 고치고 그다음에 8전비 고치고 그 다음 보니까 학생중앙군사학교하고 일부 시설의 진입로 고치고…… 저는 그것보다 훨씬 초급간부들,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간부들에 대한 부분 초과근무수당을 좀 해 주시

고, 하급장교 급여를 올려 주는 것 너무 인색합니다, 차관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다 같이 군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제가 납득할 만한 것들, 급수시설 개선하는 것 좋고 다 좋지만 해군 간부숙소 리모델링, 육군 간부숙소 리모델링 그다음에 조기 신축 이게 과연 초급간부서부터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견간부 그 이상의 간부들에게 해 주는 것인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기 계신 저희관분들 다 초급간부를 거쳐서 저희관이 됐고 차관님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급간부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하 부대들이 지금 병사들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병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초급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지난번의 예산 사업을 다 준비했는데 감액예산 돼서 추가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이번에 안 넣었고 일부 부득이 기재부에서 원칙을 정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인사선발센터라든지 아니면 학생군사학교라든지 이런데 진입로 넓힌다든지 이런 식의 추가경정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현역 시절의 간부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혹시 가용하시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초급간부들이 피부에 와닿게, 간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그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12·3 내란 이후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차관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을 잘 지휘하고 운영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6·25 75주년인데 무엇보다도 사실 평화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방이 아주 튼튼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장마가 곧 올 것 같은데 장마철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보전 요인이 있는데 올 추경예산에 보니까 장마철 보강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다 준비가 돼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올해 계획되어 있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고 또 군에서 보면 장마가 되면 북한에서 목함지뢰라든가 각종 지뢰가 떠내려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대응을 해 주시고요.

지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과 남북 협력 채널이 다 끊겼는데 다시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저희들의 소요하고 또 방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남북군사회담이라든가 필요하면 장마에 대비한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저는 이란하고 미국·이스라엘, 이 중동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왔었는데 보고가 없어서 좀 유감인데 다음 국방위 전체회의 할 때 그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은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국방부도 이런 전훈,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연합 주한미군사는 경계 등급을 올렸던데 그대로 지금 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감시 태세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특별히 조치한 것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들이 연합이라는 것이 한미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청해부대에는 어떤 지침을 쳤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은 그 지역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태세를 좀 강화시키고 또 지나다니는 우리 상선들 거기에 대한 연락체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체킹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도하하고 지금 중동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했던 그 기지에도 우리 파병 요원이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김병주 위원**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장병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군은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병커버스터의 위력을 처음으로 보여 줬는데 GBU-57 이런 것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이 한 두 가지로 될 것 같아요.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핵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북한은 여기에 아주 어디보다도 관심 있게 볼 텐데?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별도의 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이 NATO라든가 여러 국가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 올리라고 지금 요구

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는 가시적으로 이런 요구가 온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미 국방장관이 언론에서 기타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예의 주시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1422억 원을 증액하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범위 내에, 1422억 원 중에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제안했던 게 있잖아요. 그때 제안했던 품목이 여기에 포함이 좀 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 증액했던 것은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예 포함이 안 됐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고려도 안 하던 부분을 지금 1422억 원을 추가한 건데 정말 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나왔는데 그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첫째,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시설 신축과 관련돼서 선행연구하는 데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 건설을 하는 것은 2030년에서 34년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선행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 왜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할 수가 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실제로 2030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면 2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행연구에서 그것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봐야 되고 이런 걸 검토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최초에는 그것을 넣었었는데 이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사업과 연계되고 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넣어서 선행연구비를 반영해서 선행연구를 시작하면 저희가 계획된 30년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추경이 된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통상 선행연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팀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육군 연병장 현대화 관련돼서 18개 부대에 대한 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인조잔디하고 트랙에 관련되는 부분,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대를 세부적으로 뜯어 보면 대부분이 여단급 이상 사령부에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했고 대대급 이하는 4개 부대 정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단급 이상 부대에 이것이 집중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병장의 어떤 구조 특성상 보면 대대급 이하의 전방에 있는 부대들의 연병장은 그렇게 큰 연병장 소요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춘 연병장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대대급의 그 조그마한 연병장들에다가는 이런 것들을 다, 인조잔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하여튼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거대한 예산을 지금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 우리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오늘 군급식기본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예하부대에서 작동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별도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요구되는 것들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 법안과 예산에 대한 소요를 정확히 지금 연계 시켜서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요……

○**임종득 위원** 그것 참고를 좀 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은 예산, 1422억이라고 하는 추경예산안에 진짜 불요불급한, 시급한 우리 장병 복지라든가 초급 간부의 사기 복지를 위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일부 감액을 이 안에서 시킨다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우려 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의 추경을 보니까 다 공통된 의견 같아요. 과연 우리 장병들 복지, 사기 진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들이에요, 7개 사업 자체가 이게 시설유지관리 쪽을 제외하고는 6개는 80%, 적게는 60%에 머무는 것들이거든요. 그

러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부터 시작해서 예정처 지적 이런 것들이 많은 사업을 다시 넣은 거거든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군사 건설, 시설 건설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는 42%밖에 집행률이 안 나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끼워 넣기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정비 및 보급시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30% 초반이거나 미만이에요, 집행률이. 그러면 여기다가 추경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물론 내일 예산소위에서 다시 논의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병 인건비를 결국은 감액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도 감액을 일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을 하면서 2차 감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부승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1242억 원의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연도 병력 운영 목표치는 뭐고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캡이 크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무청에 확인해 보면 통상적으로 임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차가 적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병 인건비와 관련돼서 편성할 때는 오차가 커요. 1만 단위로 나와요, 23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1000억 이상이 불용됐고 2024년에 숫자는 적은데 그때도 불용이 있었고요, 25년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운용 목표치가 27만 몇천 명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 운용은 26만 명에 머물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기계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전에 2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기본급식비 있잖아요. 1만 3000원을 1만 5000원으로 올리는 것 이게 사실은 1000원 정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으로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허영 위원님께서, 자동진급제 폐지와 관련돼서 왜 우리는…… 물론 힘들지요. 초급 간부들도 그렇고 지휘관들도 병사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라떼는’ 시대의 병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징병제거든요. 징병,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차별을 둔다? 그러면 차별을 두려면 왜 네거티브로 가야 됩니까, 자동진급제를 폐지하는 식으로? 포지티브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지연진급 사례가 형사·징계처분이 50%예요. 그런데 체력검정이 30%를 차지해요. 아니, 체력검정을 통해서 협역 판정을 받고 온 자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사들이.

1분만, 정리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짧게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했더니, 더 드려야 되겠어요.

○부승찬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체력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체력평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이 30%나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병사들의 잘못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간부들의 부대 운영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거티브한 제재를 가한다, 그것도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징병제하에서. 이것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동진급제를 폐지하지 않는 게 맞아요. 어차피 징계니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진급을 안 시키잖아요. 누락을 시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잘 봤습니다.

제가 오늘 사·보임되고 나서 첫 보임된 국방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여쭙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지난 12·3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병사들에 대한 교육, 위법 부당한 계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 12·3 내란의 실질적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중간 간부나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상관인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위법 부당한 내란 이 지휘를 거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국가의 역할은…… 다 우리의 장병입니다. 그러한 우리 장병들한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치료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 계엄에 직접 같이 동원이 됐던 장병들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치료는 다 완료돼서 진행이 되고 약간 조금 증상이 심한 이런 장병들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일반 장병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층별로 대상별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이,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정도는 지금 기준에 우리 장병들 교육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또 특히 트라우마가 심한 심리치료 같은 경우 아니면 신체적 치

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 내부에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긴급하게 이 추경안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수위 대신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바로 인수위 없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재명 정부의 국방과 관련된 개혁 그다음에 로드맵,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전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같은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명선 위원** 보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황명선 위원** 이것과 관련된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 가운데에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여서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요.

○**황명선 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좀……

○**위원장 성일종** 조금, 오늘은 저거니까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부탁.

저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하는 위원님들 아무도 없고요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장하듯이 해서 이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잘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정부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여당의.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 대통령이 선출됐고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화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것에 대해서 다 논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내란…… 그러면 내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미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저희가 내란에 동조한 적 없고요 저희는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요.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안보를 위하는 국방위에서,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비를 GDP 5%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저희가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한도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과거의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되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헌법적…… 정정하겠습니다. 사법적인 처리를 받고 있는, 후에…… 제가 여기서 형법의 87조 내란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내란 내란 하면 과거에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겪쳤던 사회의 불안, 국가적인 혼란 그다음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마주 대하면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12·3은 계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조금 있으면 국방부장관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안규백 위원이 국방부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민간인으로서 64년 만에 최초입니다. 제일 적임자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 안규백 위원을 민간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을 추천한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추천했습니다. 올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회의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곧 진행이…… 그만큼 적임자라고 봅니다. 지금 5선 의원에다가 17년 가까이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 요청서가 오면 이제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날짜를 결정을 할 텐데 지금 국방부장관 공백이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방위원장님도 그런 명목으로 국방부장관 임명을 일찍 해야 된다고 연초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 회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김병주 위원 아니, 저의 의견을 제시…… 그래서 좀 빨리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법도 저는 21대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국방부장관은 특히 청문회가 끝나고 영이 서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이번에 좀 시범적으로 우리 국방위라도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저는 21대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절에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고, 취임하고 나서도 영이 안 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군 생활 39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국회의원 하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위라도 이번에 좀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를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규백 위원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으로 국방위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의 형태로 여러 문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 방금 전에 부승찬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자동 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평가로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규칙으로 돼 있다면서요? 규칙으로 이 규정을 해 놨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좀 규칙인지 훈령인지 지금 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군인사법 시행규칙인데 이게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자동 진급도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면서 사고를 쳤다든지 이랬었을 때는 이병에서 일병 가거나 일병에서 상병을 가거나 또 상병에서 병장을 가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제어를 하고 또 그 병사가 여러 가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빨리 이렇게 더 진급을 고려해서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격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력 관련되거나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한번 다시 다듬으시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부에서 하게 되면 조정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과 임종득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을 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률안심사(7인)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허영	더불어민주당(4)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윤상현 임종득 한기호	국민의 힘(3)
예산결산심사(8인)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황명선 황희	더불어민주당(5)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국민의 힘(3)
청원심사(4인)	◎추미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2)
	강선영	국민의 힘(1)
	백선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3인)

강선영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윤상현 임종득 추미애 한기호
허영 황명선 황희

○출장 위원(1인)

강대식

○청가 위원(2인)

김민석 안규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욱

계획예산관 신태복

법무관리관 홍창식

인사기획관 오영대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육군본부

참모차장 고현석

예산편성과장 우양우

해군본부

참모차장 최성혁

예산차장직무대리 이상희

공군본부

참모차장 박기완

예산차장 김은희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박승일

예산처장 유정규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현

기획조정관 홍미루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보고사항】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2025. 6. 10.
조승래	황명선		
윤상현	유용원	국민의힘	2025. 6. 20.
유용원	윤상현		2025. 6. 24.

○ 의안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1)

2월 19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월 20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26.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이상 2건 2월 27일 회부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이상 4건 3월 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3월 10일 회부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3월 11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1)

3월 12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3월 1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3월 17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3월 18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이상 4건 3월 20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6)

3월 26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4월 2일 회부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4.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4월 7일 회부됨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월 8일 회부됨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8)

이상 2건 4월 9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이상 2건 4월 10일 회부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이상 2건 4월 11일 회부됨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이상 2건 4월 1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4월 15일 회부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1)

4월 16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4월 17일 회부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이상 2건 4월 21일 회부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1.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이상 2건 4월 22일 회부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이상 2건 4월 23일 회부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이상 2건 4월 28일 회부됨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30.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9)

5월 2일 회부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이상 2건 5월 7일 회부됨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5. 7.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5월 8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0)

5월 9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5월 12일 회부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5월 13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이상 3건 5월 14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5월 21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6)

이상 2건 5월 22일 회부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5월 26일 회부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이상 2건 5월 28일 회부됨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25. 5. 3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9)

이상 2건 6월 2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이상 5건 6월 11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6월 13일 회부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이상 2건 6월 17일 회부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6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2025. 2. 24. 김기현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8377)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2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6)

이상 2건 2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2)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3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8)

**이상 2건 3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2025. 3. 27. 나경원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9422)

**3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9)

4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6)

**4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3)

**4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2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4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윤석열 정부 12·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4. 2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6)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4. 2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7)

**이상 2건 4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8)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5. 9.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1)

**5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9)

**이상 2건 5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6)

**5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9)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6. 1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7)

이상 2건 6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반현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4. 25. 유찬욱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7)

4월 28일 회부됨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6. 9. 박연호 외 50,06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1)

6월 10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26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2025. 2. 20.
대통령령	제35265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2025. 2. 24.
국방부령	제1169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2025. 2. 24.
대통령령	제3528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2025. 2. 27.
대통령령	제35286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2025. 3. 6.
대통령령	제3538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2025. 3. 18.
국방부령	제117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2025. 3. 18.
대통령령	제3549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5. 7.
국방부령	제11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5. 23.
대통령령	제35542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1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5. 30.
대통령령	제3554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6. 2.
국방부령	제1177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0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방부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2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6. 2.

○ 보고서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2. 26. 헌법재판소장 제출)

법률 공포 통지

(2025. 3. 19. 정부 제출)

20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제출

(2025. 3. 28. 국방부장관 제출)

2025년 1/4분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대개편사업 집행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2025. 4. 1. 국방부장관 제출)

2025년도 1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제출

(2025. 4. 2. 병무청장 제출)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제출

(2025. 4. 3. 방위사업청장 제출)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2025. 4. 4. 방위사업청장 제출)

25.1차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 제출

(2025. 4. 4. 방위사업청장 제출)

헌법소원심판결정서(2025.4.10.) 송부

(2025. 4. 11. 헌법재판소장 제출)

2024년도 국방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2025. 4. 15. 국방부장관 제출)

특별검사 공소제기 사건의 판결확정 보고

(2025. 4. 21.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출)

2025년도 국방부 1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4. 23. 국방부장관 제출)

2024년도 병무청 자체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2025. 4. 30. 병무청장 제출)

2025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 제출

(2025. 5. 2. 방위사업청장 제출)

2025년 군인복지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출

(2025. 5. 15. 국방부장관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5. 27. 헌법재판소장 제출)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제출

(2025. 5. 29. 국방부장관 제출)

2024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2025. 5.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및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현황 보고

(2025. 5. 30. 국방부장관 제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5. 6. 2. 국방부장관 제출)